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762
----------	------

발의연월일 : 2017. 8. 28.

발의자 : 조승래 · 이해찬 · 김영호
박영선 · 박광온 · 심기준
정성호 · 송영길 · 김종민
신창현 · 홍의락 · 윤관석
추미애 · 박병석 · 김병기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법령 적용상의 특례를 두고 있으므로 개별법에서 특별자치시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법 적용상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개별법에 특별자치시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에게 법 해석상의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단위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으로써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교육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운영) ① (생 략)</p> <p>② 지역경제교육센터는 <u>광역</u> 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2개 이상의 시·도를 묶어 권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p>	<p>제9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광역</u> 시·특별자치시-----</p> <p>-----</p> <p>-----</p> <p>-----</p> <p>-----</p> <p>-.</p>
<p>③ ~ ⑤ (생 략)</p>	<p>③ ~ ⑤ (현행과 같음)</p>